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2. 11 선고 2020나59947(본소), 2020나59954(반소)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· 대여금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2. 11 선고 2020나59947(본소), 2020나59954(반소) 판결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6. 17 선고 2019가단15841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준호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B(개명 전 C)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민

담당변호사 윤승희

변론 종결 2020. 11. 27.

판결 선고 2020. 12. 11.

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6. 17. 선고 2019가단15841(본소), 2019가단267987(반소)
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본 소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)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. 피고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)에게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8. 16. 접수 제156993으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반 소 청 구 취 지

원고는 피고에게 17,960,073원과 그 중 16,211,857원에 대하여 2019. 11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0행의 "다음 날"과 "D 주식회사" 사이에 "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"을, "D 주식회사"와 "주식회사 E" 사이에 "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"를 각 추가하고, 18행의 "변제에"를 "변제를"로, 3쪽 6행의 "증인"을 "제1심증인"으로 각 고치며, 3쪽 2행의 앞부분 "이자를"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[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은 정당하다. 원고의 항소이유는 처분문서인 금전소비대차 등 약정서(갑 제1호증)의 증명력을 뒤집어 볼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의 뒷받침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]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정중

판사문성관

판사이주영